

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(안) 심사보고서

1992. 11. 23
행정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2년 11월 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2년 11월 2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4회 영등포구의회(임시회)폐회중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개최(1992년 11월 23일) 상정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金興權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92년도 5월 7일 구의회 제11회 임시회 본회의 및 10월 26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부동의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(추가)동의를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.

나. 주요골자

신길 3동 326-26호 소재 경제기획원 통계청 주택조합아파트 사업지구내 용도 폐기된 도로 81㎡를 유상 매입하고 주변도로 개설용 1,572㎡를 매입,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 승인한 사항이므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용자와 준공이 불가능하므로 입주대상 321세대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민원은 계속될 것이므로 사업승인 조건대로 경제기획원통계청 주택조합에 매

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金熙中)

- 신길3동 362-28대 81㎡은 추후 행정목적이나, 주민의 복리시설등으로 활용하기 곤란한 소규모 토지로써,
- 영등포구청에서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직장주택조합측에 단지내 구유지 81㎡를 준공전까지 유상매입하고, 조합측 부지 1573㎡를 도로로 신설 개설하여 우리구에 무상기부채납토록 조건을 부여 승인한 사항으로,
- 준공전까지 81㎡를 매입하지 못하면, 321가구 조합원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,
- 행정목적을 위해 보존하는 것 보다는 주택난 해소를 통한 다수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조합측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5. 토론 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생략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별첨 : '92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(안) 1부.

'92.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(안)

의안 번호	137	제출년월일 : 1992. 11. 20. 제출자 : 영 등 포 구 청 장
----------	-----	--

1. 제 안 이 유

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
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 1항에 의거 '92
 년도 5월 7일 구의회 제11호 임시회 제2차
 본회의 및 10. 26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
 부동의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구유재
 산관리계획변경(추가)동의를 얻어 시행하
 기 위한 것임.

2. 주 요 골 자

신길3동 326-26호 소재 경제기획원 통계
 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지구내 용도폐지된
 도로 81㎡를 유상매입하고 주변도로 개설용
 1,572㎡를 매입,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
 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한 사항이므로 매
 각되지않을 경우 금융기관의 용자와 준공이
 불가능하므로 입주대상 321세대의 재산권
 행사에 따른 민원은 계속될것이므로 사업
 승인조건대로 경제기획원 통계청 주택조
 합에 매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.

○ '92 변경(추가) 동의안

매각 : 1건 1필지 81㎡

※ 관리계획계상재산목록별첨

구 유 재 산 관 리 계 획
 1992년도 관리계획 총괄표(6-1)

회계명 : 일반회계

(단위㎡, 천원)

구	분	상 반 기			하 반 기			합 계			비고
	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건 수	수 량	금 액	
취득	계										
	1.매입										
매각	계				1	81	81,000	1	81	81,000	
	2.매각				1	81	81,000	1	81	81,000	
기타											

1992년도 매각대상·재산목록(6-4)

관리청명 : 영등포구

회 계 명 : 일반회계

(단위 : ㎡, 천원)

일련 번호	재산의표시			매각대상 수 량	과표또는 평 가 액	매각시기	매 각 사유	매 수 회 망 자 주 소 · 성 명	비고
	지목	소재지	일단의수량						
1	대지	신길3동 362-26	81	81	81,000	하반기	직장주택조합 사 업시행 지구안에 위치	종로구 경운동 90 경제기획원 조사 통계국 직장주택 조합	

연번 : 4

(매 각 대 상 재 산 현 황)

1. 재산의 표시 및 매수신청인

재 산 의 표 시			매각 대상 면적(m ²)	매 수 신 청 인		비 고
소 재 지	지목	면적(m ²)		주 소	성 명	
신길3동 362-26	대지	81	81	종로, 경운동 90	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직장주택조합	

2. 재 산 관 리 현 황

관 리 상 태 (현 용 도)	토 지 의 특 성	비 고
나대지 상태로 점유	일반주거지역 사업시행지구안에 위치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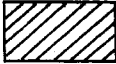
3. 처 분 사 유

- 상기 구유재산을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직장주택조합 외 3개조합에서 매수하여 주택 조합을 신축코자 함.
- 사업시행내역
 - 총 면 적 : 12,624m²
 - 대상세대 : 3개동(321세대)
 - 시 행 처 :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직장주택조합 외 3개조합

4. 처 분 근 거

-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 제2호
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1호

5. 현 황 도

법 려		
공유지 :		
도 로 :		
점유부분 : (매각부분)		
		
담장선 :		

재산위치도 토지대장등 관련공부 목록

구분	목 록	비 고
매각1)	직장주택조합 사업시행 지구 안에 위치	

신길3동 통계청주택조합 아파트
부지내 구유지 매각

○재산의 표시

- 소재지 : 영등포구 신길3동 362-26호
- 지 목 : 대 지
- 매각대상면적 : 81㎡

○매각에 따른 의견

90. 10.26.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신축중인 통계청 주택조합아파트 부지내 구유지 중 당초사업 승인 당시 구에서 매각기로 한 나머지 81㎡를 조합에서 매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택자금융자 불가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준공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는 바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매각에 필요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
1992. 11

永登浦區 區議會議員

조 연 제

신길3동 통계청주택조합 아파트
부지내 구유지 매각

○재산의 표시

- 소재지 : 영등포구 신길3동 362-26호

- 지 목 : 대 지
- 매각대상면적 : 81㎡

○매각에 따른 의견

90. 10.26.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신축중인 통계청 주택조합아파트 부지내 구유지 중 당초사업 승인 당시 구에서 매각기로 한 나머지 81㎡를 조합에서 매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주택자금융자 불가등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고 준공처리에도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되는 바 해당지역 구의원으로서 매각에 필요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

1992. 11

永登浦區 區議會議員

권 혁 필

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
(안)

의안 번호	발의년월일: 1992. 11. 21. 발 의 자: 안주영 의원의 6인
----------	---

1. 제 안 이 유

가.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인 영등포구청의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들음으로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관내 주민 의견수렴 사항을 구정에 반영하고자 관계공무원출석을 요구함.

2. 주 요 골 자

- 가.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대상
 - (1) 부구청장
 - (2) 보건소장